

서 면 답 변 서

질의위원	이수현 위원	소 속	평창군의회
답 변 자	평 창 군 수 (재 무 과 장)	일 자	질의 : 2000년 12월 13일 답변 : 2000년 12월 13일
회 의	제8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2차 예결특위		

질의요지

- 불용품 매각 가격결정 규정 제출

답변내용

- 불용물품의 매각은 지방재정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와 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지침(행정자치부), 평창군물품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불용결정된 물품을 일반경쟁입찰로 매각 처분하며,
- 불용매각 가격결정은 평창군물품관리조례 제17조4항에 의거 매각물건의 당초 취득가격이 10,000,000원 이상의 물품은 감정기관에 감정 평가하여야 하며, 동조례 제17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거래 실패가격 및 견적가격을 물품관리관이 직접조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평창군물품관리조례 관련규정 사본 1부. 끝.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공 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전적가격
7. 제1호내지 제5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 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물품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후 소요 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불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도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불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불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이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

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지경제적인 물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일 직할시·도(시·군·자치구 포함)와 정부 각부처, 타 특별시·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 가격(정부가격 기준)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
2. 동일 직할시·도(시·군·자치구 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 가격(정부가격 기준)이 10백만원 미만인 경우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불용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정 95·3·6>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 실행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⑥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불용품의 매각 처분은 년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 3 절 보 관

제19조(보관의 구분) ①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0조(보관책임) ①재고품은 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전용품은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21조(일시보관) ①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청·소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②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①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